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강유정ㆍ김영진ㆍ김영배

강선우・김한규・서영교

장경태·박 정·박희승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및 공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
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는 공연사업자 및 공연사업
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
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
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
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u>경우 우대할 수 있다.</u> ② 무취체으고과부자과 의 제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